2022학년도

장성중학교 학부모회 규정

장 성 중 학 교

장성중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 장성중학교 학부모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학부모회의 명칭은 '장성중학교학부모회'라 하고 장성중학교에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

제4조(회원)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(학부모회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)로 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구성)

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(현행유지)

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,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 다만,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.

③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,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3명을 위촉한다.

④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

⑥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
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한다.

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학부모회의 조직)

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.

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명예교사단, 급식지원단, 자유학기학부모지원단, 학부모폴리스단 등을 둔다.

제9조(총회)

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 다만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
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,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.

⑤ 총회는 회원의 1/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

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2.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·개정 사항
3. 임원의 선출
4. 예산 및 결산 보고
5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6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
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대의원회)

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.

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
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학부모회 규정 재·개정안 발의
2. 학년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
3.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
4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5.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
제13조(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)

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
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,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.

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④ 학급 학부모회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.

제14조(기능별 학부모회)

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,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.

제15조(해산)

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.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.폐합일자로 해산한다.

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

제16조(청산)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제17조(재정지원 등)

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회계년도)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

제3조 장성중학교학부모회 규정은 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 즉시 시행한다.

2022학년도 장성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및 신설 내용(전 · 후비교)

쪽수	영역	변경 전(2021년)	변경 후(2022년)	비고
1	제5조	**제5조(임원 등의 구성)**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,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(다만,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)	**제5조(임원 등의 구성)**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(현행유지)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,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 다만,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. ⑥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.	② 추가, ⑥ 신설
2	제7조	**제7조(임원의 직무)**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**제7조(임원의 직무)**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한다.	③ 수정
3	제9조	**제9조(총회)**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	**제9조(총회)**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 다만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,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.	② 추가 ④ 수정 ⑤ 추가

		⑤ 총회는 회원의 1/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⑤ 총회는 회원의 1/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	
4	제10조	**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**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2. 학부모회 규정의 제.개정 사항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 및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	**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**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2.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·개정 사항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 및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	①의 2항 수정, ③ 수정
5		**제11조(대의원회)** ② 대의원회는 임원 , 학년학부모회 대표, 학급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.	**제11조(대의원회)** 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.	② 수정
6	제12조	**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** 3. 학부모회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	**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** 3.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	3항 수정
7	제17조	**제17조(재정지원 등)** ② 학부모회장은 본예산 편성 시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.	**제17조(재정지원 등)**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수정